



“ 당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당신 가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6 “ 지금 힘이 든다면
주저없이 손을 내미세요 ”



당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당신 가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
일자리 정보까지
언제든 가깝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 **복지로(www.bokjiro.go.kr)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통합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민센터(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복지 관련 상담과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 복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07 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각종 문의에서 쇼핑, 병원진료 예약, 구직, 회사 업무 통화, 가족, 친구와의 연락까지 청각, 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 드립니다.
- ✓ **워크넷(www.worknet.go.kr)**
국가 취업포털 사이트로 일자리 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 등 다양한 고용정보로 취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내게 맞는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임대주택 찾기'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힘들 땐 주저 없이
도움을 청하세요



1

이 책은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일, 혼자 헤쳐 나가려 하지 마세요

빈곤, 실직과 사업실패, 장애와 고령, 갑작스런 사고와 건강 악화까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바로 곁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책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가까이 많은 복지서비스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 복지서비스가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싶다면

이 책의 288p에 수록된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를
참고하세요.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면

「알려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책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해당사업의 문의·신청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며,
주요기관 연락처는 328p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

3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라 370여 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20p), 긴급복지지원제도(24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 사업(27~31p), 창업자금 지원(45~46p) 등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분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업급여(56p), 취업성공패키지(57p), 내일배움카드제(58p), 근로장려금(62p) 등

임신, 출산, 보육을 걱정하는 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78~81p), 보육 지원(89~94p), 방과후 돌봄(101~102p),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돈학자금대출(111p) 등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 제도(136p),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137p),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53p) 등

노후를 걱정하는 어르신

재정적인 도움을 비롯해,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156p), 노인사회활동 지원(160p), 치아관리비용 지원(166~167p) 등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176p), 장애인직업능력개발(186p), 장애인활동 지원(205p) 등

이 밖에 다양한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
기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
들 및 그 가족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복지서비스를 대표하는 주요사업 50



-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p)
- 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23p)
- 3 긴급복지지원제도 (24p)
- 4 장기전세주택 임대 (29p)
- 5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 (29p)
- 6 미소금융 (45p)
- 7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p)
- 8 실업급여 (56p)
- 9 취업성공패키지 (57p)
- 10 내일배움카드제 (58p)
- 11 희망키움통장(I, II) (60p)
- 12 근로장려금 (62p)
- 1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79p)
- 1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80p)
- 15 출산 전·후 휴가급여 (85p)
- 16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89p)
- 17 가정양육수당 지원 (91p)
- 18 아이돌봄서비스 (92p)
- 19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97p)
- 20 초등돌봄교실 (101p)
- 21 지역아동센터 지원 (101p)
- 2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02p)
- 23 국가장학금 (106p)
- 2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111p)
- 25 건강보험 제도 (136p)
- 26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37p)
- 27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38p)
- 28 의료급여 제도 (141p)
- 29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142p)
- 30 건강검진 제도 (148p)
- 3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53p)
- 3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53p)
- 33 기초연금 제도 (156p)
- 34 주택연금 제도 (158p)
- 35 노인 사회활동 지원 (160p)
- 36 치매검진 지원 (164p)
- 37 노인틀니 지원 (166p)
- 38 노인임플란트 지원 (167p)
- 39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172p)
- 40 장애인연금 (176p)
- 41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86p)
- 42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9p)
- 43 장애인 활동 지원 (205p)
- 4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216p)
- 4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43p)
- 4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45p)
- 4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48p)
-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257p)
- 49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264p)
- 50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 (277p)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함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원/월)	162만 4,831	276만 6,603	357만 9,019	439만 1,43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원/월)	520만 3,849	601만 6,265	682만 8,680	764만 1,095

※ 9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만 2,415원씩 증가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29%)	47만 1,201	80만 2,315	103만 7,916	127만 3,516	150만 9,116	174만 4,717	198만 317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4만 9,932	110만 6,642	143만 1,608	175만 6,574	208만 1,540	240만 6,506	273만 1,472
주거급여 (중위소득43%)	69만 8,677	118만 9,640	153만 8,978	188만 8,317	223만 7,656	258만 6,994	293만 6,3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1만 2,415	138만 3,302	178만 9,509	219만 5,717	260만 1,925	300만 8,132	341만 4,339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원/월)	164만 7,000	316만 4,000	450만 8,000	516만 1,00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원/월)	544만 5,000	573만	601만 4,000	629만 9,000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동에 거주하면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2015년 4인가구 기준으로 작성

구분	3인가구 이하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금액(원/월)	473만 4,600	522만 4,640	556만 20





복지는 쉽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 한번에! www.bokjiro.go.kr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는 일도, 신청하는 일도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사회보장정보 360여 종, 지자체 서비스 12,000여 종, 이 모든 복지정보를 연령별, 상황별로 분류하여 한눈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

▶ 간편검색

연령, 가족특성, 필요한 지원 등 간단한 항목 선택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세검색

상세정보 입력 또는 본인 확인을 통한 자동 정보제공으로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4종



CONTENTS

생계지원 서비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20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24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27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39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49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56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57
-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64
-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65
-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70

임신·보육·교육 지원서비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요?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76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84
-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89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95
-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100
-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101
-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103
-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116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136
-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141
-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145
-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148
-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50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153



CONTENTS

노령층 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156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60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161
- 치매가 걱정될 때 164
-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166
-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169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172

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176
-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178
-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182
-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186
-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193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198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205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212
-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214
-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216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220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242
-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264
-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271
-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276
-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277
-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280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01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선정기준은 이 책자 앞부분의 '알려드립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만 3,520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거구는 낮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가구	19만 5천원	17만 4천원	14만 3천원	13만 3천원
2인가구	22만 5천원	19만 5천원	15만 4천원	14만 3천원
3인가구	26만 6천원	23만 6천원	18만 4천원	17만 4천원
4인가구	30만 7천원	27만 6천원	21만 5천원	19만 5천원
5인가구	31만 7천원	28만 7천원	22만 5천원	20만 5천원
6인가구	36만 9천원	33만 8천원	25만 6천원	23만 6천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그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신청

- 생계급여·의료급여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주거급여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 통화료 면제(월 시내75, 시외75도수)] • 이동전화 기본료 월 15,000원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단, 감면은 가구당 4인 한도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8천원, 단, 교육급여대상자 월 최대 4천원)	한국전력(☎123)	
문화활동비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요금 면제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02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만 8천원, 4인기준 329만 3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3만 1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2만 2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0만 2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만 4천원, 중학생 34만 1천원, 고등학생 41만 8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지원	9만 3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약·위기 가족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4인기준 316만 2천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 기능회복 및 역량강화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지원내용

- 초등학교 1~6학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조손가족 손자녀 및 한부모가족 자녀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생활·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본부(☎02-3479-7616),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1.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지원 가능 가구

2. 지원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합니다.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최고 30만원, 진단비 및 교육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129)

03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주택임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과 일반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66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공공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66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취약·노인계층,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 부모 합계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 초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산업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 자산기준 충족

2. 지원내용

행복주택의 80%는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20%는 취약·노인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산업단지에 공급 되는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장기전세 주택 임대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2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50%(4인기준 261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 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61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61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22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8,000만원, 광역시 최대 6,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5,0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

▶ 수도권에서 전세금 8,000만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만 7천원 수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장 6년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신청

취약계층 주거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2.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최초 2년 계약)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신청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급 물량 범위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신청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 1. 지원대상**
건설한지 15년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 2. 지원내용**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승강기,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자체 및 LH공사에서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1. 지원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경로당
- 2. 지원내용**
노후된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가스담당 부서,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 에너지 지원

- 1.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 2. 지원내용**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신청(☎031-260-4114)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 기기 무상교체 지원

- 1.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 2. 지원내용**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성 높은 LED 조명기기로 무료 교체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에너지 바우처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

2.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규모	27,000원 X 3개월	34,000원 X 3개월	38,000원 X 3개월
총 지원금액	81,000원	102,000원	114,000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 세대별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의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 신청 가능
 - ※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사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전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자주 하는 질문

- 생계급여 수급자인 만 66세 노인으로 노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가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가구의 난방비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존 연탄바우처(또는 등유쿠폰)을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 가능하니까?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 수급자나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취약 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1. 지원대상

저소득층, 결손가정(소년소녀가장, 조손 또는 한부모가족 등), 다문 화가정,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가구

2. 지원내용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및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등을 지원합니다.

※ 폼알데하이드,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성질환 유발인자의 농도를 측정·점검하여,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에 대하여 친환경벽지·장판 교체 등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자체(시·군·구청)가 해당가구를 선정하여 환경부에 추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306), 환경부(☎044-201-6763)

자주 하는 질문

- 한부모가족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 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하여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환경성 질환이란?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생활환경 속에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인 무주택자
- 2. 지원내용**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5~3.1%)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수도권 1억원, 지방 8천만원 한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택도시금융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주택도시금융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중소기업은행)

버팀목대출 보증

-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인 무주택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금융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28%로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시)

- 1.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대상자
·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2. 지원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연 1.5%)로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대출해 드립니다. (총 720만원 한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택도시금융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우리은행(☎1588-5000)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1.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금융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금융의 월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까지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 매월 최대 27만원씩 2년간 총 648만원 한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우리은행(☎1588-5000)에 방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대부

1. 지원대상

- 의료비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인 근로자('16년, 239만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평
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6년 168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6년 168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2종류 이상 용자신청시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활 자금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인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	1인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희망드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 지원대상

4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자 또는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 및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자 제외)

2. 지원내용

월 최대 100만원(1인당 지원한도 1,000만원)의 생계비를 저금리(연 1%)로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미소금융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도 지원

2.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0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미소금융재단 지점 신청(☎1600-3500)

햇살론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

2. 지원내용

- 사용목적에 따라 연 10.5% 이내(보증료 포함)의 금리로 최대 5천만원 까지 대출해드립니다.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생계자금 1천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서민금융회사(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신청(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알려드립니다

- **고금리채무 대환자금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바꿔드림론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10등급이며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

2.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환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국민행복기금 신청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새희망홀씨

1.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지원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각 은행 신청(한국이저론 ☎1644-1110)

07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 기금 채무조정

- 1.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 2. 지원내용**
채무자의 연명,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원금의 30~50%를 감면(특수채무자는 60~70%)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행복기금 신청(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 1.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2. 지원내용**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시 최대 50%)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08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 해소를 지원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 1.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이하의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간병·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자
- 2.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간병 또는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드립니다.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양곡할인

-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 지원내용**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사랑의 그린PC

1. 지원대상

- 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계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 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재활원 등 사회복지단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기관

2. 지원내용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하여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주민등록기준) 관할 지자체 방문, 우편 신청
-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https://lovepc.ni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알려드립니다

- 보급되는 PC 사양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 펜티엄IV급 이상(CPU : 3.0Ghz, RAM 2GB, HDD 200GB, 모니터 LCD 17인치 이상)
-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 신청기간은 시·도에서 매년 초에 신청/접수하고 있으며, 요청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거주지의 시청 또는 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 시도별 담당부서 연락처는 온라인(<https://lovepc.nia.or.kr>)에서 확인가능
-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인가증 등 비영리 단체증명서

문화 누리카드 (통합문화 이용권)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6세 이상)

2. 지원내용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음반·도서 구입,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간 5만원)를 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사용안내-오프라인가맹점, 온라인마켓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신청(문화누리 고객센터 ☎1544-3412)

※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의 대표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자격신청 완료 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5년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기존의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서 신청서 "재충전"에 표기하신 후 정보를 작성하시면 2016년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나요?
 - ☞ 아닙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지원금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단, 본인충전금은 농협영업점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일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 자리를 원할 때
- 여성이 일 자리를 원할 때
-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 청년이 일 자리를 원할 때



01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실업급여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1.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 사정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1일 40,176원~43,000원, '15.12월 기준)

3. 신청방법 및 문의

퇴사 후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350)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0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취업훈련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 지원대상

• I유형 : 만 18세~64세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4인기준 263만원) 이하인 가구원,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 II유형 :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층, 만 35세~64세의 미취업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기준 439만원) 이하인 중장년층

2.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단계) 취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 - I유형 : 15만원 ~ 25만원 지급 - II유형 : 15만원 ~ 20만원 지급
(2단계) 취업의욕, 취업능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 ~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 (I유형 : 자부담 면제, II유형 : 10 ~ 20% 자부담) 2단계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급
(3단계) 집중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I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00만원(취업 후 1개월 근속 시 20만원, 3개월 근속 시 30만원,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내일배움 카드제

1.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 연간소득 8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2. 지원내용

- 1년 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의 50%~90%(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 전액)를 지원합니다.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하는 경우에 훈련 장려금(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 드리며, 훈련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 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 HRD-Net에 훈련종료 후 14일 이내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03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일자리 마련

저소득층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활근로

1. 지원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 등과 같이 기술습득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전국 247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지원대상

미취업자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3. 신청방법 및 문의

일모아 홈페이지(www.ilmoa.go.kr)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조회 한 후 관련기관에 문의 후 신청

근로장려금

1. 지원대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50세 이상인 자

※ 다만, 소득·재산·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지원내용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이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가구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

2. 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
총소득 기준금액 ('15년 기준)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70만원	170만원	21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세무서 신청 국세청 콜센터(☎126)

자녀장려금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이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가구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

2. 지원내용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의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세무서 신청 국세청 콜센터(☎126)

자주 하는 질문

● 소득 가구에도 지급되나요 ?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05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 교육훈련 및 능력 개발 기회제공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1. 지원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로 문의 후 신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t.go.kr) 참고

06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사회공헌활동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1. 지원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지원내용

업종별로 지정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정년연장 지원

1. 지원대상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3년 연장하면 1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 1. 지원대상**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후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2. 지원내용**
1년~3년 동안 재고용하면 6개월간, 3년 이상 재고용하면 1년간, 재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1350)

임금피크제 지원금

- 1. 지원대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지원
- 2. 지원내용**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한도에서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1350)

장년취업 인턴제

-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장년인 미취업자
- 2. 지원내용**
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및 아래 기관에 신청, 고용센터(☎1350)

관할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359
충부청	(사)인천벤처기업협회	☎032-260-2845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031-853-6681
경기	화성상공회의소(대)	☎031-350-7962
	수원상공회의소(보)	☎031-244-3454
	용인상공회의소(보)	☎031-8020-9564
강원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3-262-2095
부산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051-860-1321
창원	경남경영자총협회	☎055-263-0281
울산	(주)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277-9491
대구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053-742-1775
포항	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278-5142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070-8895-7742
광주	광주경영자총협회	☎062-654-3427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2
목포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여수	전남경영자총협회	☎061-725-7040
대전	중소기업중앙회	☎042-864-0901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1. 지원대상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창업교육, 사무공간, 상담·자문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비고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전문성·경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기술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100시간 내외의 실무 중심 기술 창업교육 지원	자기부담 교육비 10 만원 내외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기술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과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경영지원 프로그램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창업넷(<http://startup.go.kr>)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또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042-480-4387~8)

중장년취업 아카데미

1. 지원대상

전문분야에 직업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2.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훈련기관에서 훈련받는 경우 훈련기관에는
훈련비를,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5)

사회공헌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지원내용

사회공헌활동 일 4시간 이상 참여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843),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02-6369-8987) 신청

memo

07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산업현장교육, 해외취업 및 인턴수로 등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1. 지원대상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합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2. 지원내용

- 인턴기간 동안 기업(사업주)에게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제조·생산직(전기업 전기·전자관련직 및 통신업 정보통신관련직) 등의 경우 취업청년에게 220만원(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1350), 대한상공회의소(인턴 ☎02-6050-3783, 기업 ☎02-6050-3787)

청년취업 아카데미

1. 지원대상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졸업생(34세 이하)
- 일반고의 경우 졸업예정자만 가능

2. 지원내용

- 기업·사업주 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교육비 전액지원)
- 연수 후 참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052-714-8272)

해외취업 지원

1. 지원대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2.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K-Move 스쿨	•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년간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 교육비 등을 포함 1인당 단기 580만원, 장기 800만원 지원
해외취업 알선	•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해외취업희망자와 구인업체간 알선 지원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 만 34세 이하이고 8분위 소득(월 6,071,090원) 이하 가구원, 단순노무직 배제, 연봉 1,500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우대국가) 취업 1개월 후 200만원, 취업 6개월 후 200만원 • (그외 국가) 취업 1개월 후 100만원, 취업 6개월 후 100만원 *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선진국분류 26개국을 제외한 국가)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후 신청(☎1577-9997)

일·학습 병행제

- 1. 지원대상**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 병행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 2. 지원내용**
학습근로지원금 및 숙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052-714-8223)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 1.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 대학(2년제 포함)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 해 2월 졸업예정인 사람
 - 연간소득 8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2.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월 최대 3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취업사관 학교

- 1.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 2. 지원내용**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등 개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훈련비와 숙소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훈련생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1644-8000)

memo

임신·보육·교육 지원서비스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요?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01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이면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2.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시술구분	지급금액(1회)	지원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3회 * 신선배아만 시행할 경우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
	동결배아 이식	최대 60만원 3회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3회

알려드립니다

- **신선배아 이식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남성의 정자와 인위적으로 수정시킨 후 배양한 상태의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
- **동결배아 이식이란?** 최초 이식하고 남은 배아를 초저온 상태에서 동결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희망하는 배란 주기에 해동하여 이식할 수 있는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
-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상담실
 -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 (영등포구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1. 지원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된 영유아

2. 지원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에 이르기까지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 일정관리, 건강정보 및 육아상식, 주요 국가시책 홍보 등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수첩을 제공합니다. 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담당진료 의사의 판단하에 개인별 산전관리 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1.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2. 지원내용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기준 351만 3천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이 있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신부

2. 지원내용

- 개인별 처방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1.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50만원(쌍둥이인 경우 7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50만원(쌍둥이인 경우 7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 '15. 5.1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15.4.30 이전 신청자는 고운맘카드 사용
- ※ 카드수령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및 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88-8700), 롯데카드(☎1899-4282)
- 제도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129)

자주 하는 질문

- 출산 후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공단 및 위탁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며, 분만 및 유산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산모
-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12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본부로 우편 송부(☎1566-0133)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1~6급 여성장애인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4조 제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 지원내용**
출산비용을 지급합니다.
- | 대상 | 지원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아이 1인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유산·사산 포함) |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유산·사산 포함) |
| 1~6급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쌍둥이는 200만원, 만 4개월 이상 유산·사산 포함) |
- * 1~6급 여성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아이 1인당 160만원 지급(쌍둥이는 320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요양비 (출산비) 지원

- 1. 지원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2. 지원내용**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1. 지원대상**
20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2. 지원내용**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를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중,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가정
* 4인기준 직장가입자 108,551원, 지역가입자 119,434원
-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아이 1명 2주 10일, 쌍둥이 3주 15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산모 4주 24일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지원대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 후 7일(입양숙려기간)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알려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로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 소득기준 :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이하

2.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인당 최대 300만원까지)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3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질병코드 또는 수술명)받고, 질환별 입원기간과 필수진료내역을 충족해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 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 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O11, O14, O15
필수 진료 내역	•'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 및 '투여일수'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 적출술' 또는 '5팩 이상 수혈'	• '황신마크네슘 투여여부' 또는 '항고혈압제 약물명'

02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 지원내용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50~100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 본인이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예시>

-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만원*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20만원(80만원*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0만원입니다.
 - * 박엄마씨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60만원 씩 1년 동안 총 720만원(60만원*12개월)을 받고,
 -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240만원(20만원*12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1350)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1. 지원대상

출산 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출산 :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유산·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자주 하는 질문

● 언제 누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이후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지원대상

육아를 위해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2.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1350)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 1. 지원대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2. 지원내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신청(☎1350)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금 (육아휴직 등 부여)

- 1. 지원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2.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육아휴직 허용시 월 10만원(단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월 5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20만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시 월 20만원(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30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신청(☎1350)

알려드립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 (기존)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 지급, 나머지 (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1.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2. 지원내용**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신청(☎1350)

memo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지원대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종류	지원한도	상세 지원내용
설치비	무상 지원	시설설치비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산단형 15억원 컨소시엄 6억원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 시설 80%)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교재교구비	5천만원 - 교재교구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황: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12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규모별 월 120~520만원 - 19명 이하: 120만원 - 20명~39명 이하: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440만원 - 100인 이상: 520만원 (고용센터에 신청)

3. 신청방법 및 문의

- 설치비 : 근로복지공단 ☎052-704-7354,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9, 부산 ☎051-320-8181~6, 대전 ☎042-870-9110~6)
- 운영비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3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0만 6천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16.3월 이후 단가변경예정)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어린이집 (보육료)	40만6천원	35만7천원	29만5천원	22만원	22만원	22만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은 기존서비스 지원, 익월 1일 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지원대상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3~5세 아동

2.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보육료 :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유의사항>

-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포털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
 - 취학유예의 경우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듀콜센터 ☎1544-0079)

가정양육 수당 지원

1.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만 0~5세 영유아

2.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령 (개월)	양육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12~23	15만원	12~23	17만 7천원		
24~35	10만원	24~35	15만 6천원		
36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만 9천원	36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48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1. 지원대상

부모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어른 없이 아동이 혼자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 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월 130만원) 0~1세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 기준 284만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이하 (4인 기준 374만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이하 (4인 기준 527만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A형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 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아동도 지원가능), 야간보육(19:30~익일 07:30), 24시간보육(07:30~익일 07:30), 휴일보육(공휴일)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간제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아동

2. 지원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시간당 보육료 :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 : 1,000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시간제보육콜센터(☎1661-9361)에 신청·문의

육아종합 지원센터

1.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장난감 등의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이용, 부모에 대한 육아상담(아이사랑 플래너) 및 교육(키움뜰 부모교육), 양육관련 프로그램 제공, 부모간 육아정보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1. 지원대상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

2. 지원내용

- 안전한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 대여를 지원합니다.
- 부모,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상시프로그램을 운영(주 2회 이상)합니다.
※ 동화구연, 미술놀이, 요리활동, 아동놀이지도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알려드립니다

● 공동육아나눔터란?

-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에 따라 설치하여 아이를 키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눔으로써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녀는 또래를 만날 수 있으며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하고 대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입니다.

04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지원대상

- 검사 : 전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테인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환아의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2. 지원내용

청각선별검사비(AOAE 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1.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2. 지원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양 플러스

-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기준 35만 3천원) 미만인 가구의 저체중, 영양섭취가 불량한 만 6세(72개월) 이하 영유아
- 2. 지원내용**
보충영양식품을 지급하고 부모에게 영양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기준 175만 6,574원)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2.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정액 지원합니다.
※ 16년 지원단가 : 기저귀(월 6만 4천원),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만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 2. 지원내용**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15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항목	국가예방접종 목록
1	BCG(피내용)
2	B형간염
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4	IPV(폴리오)
5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6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7	수두
8	일본뇌염(생백신)
9	일본뇌염(사백신)
10	Td(파상풍/디프테리아)
11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12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3	PCV(폐렴구균)
14	A형간염
15	자궁경부암(16년 상반기)

- 3. 신청방법 및 문의**
전국 보건소 및 7천여 지정 의료기관 방문(보건복지콜센터 ☎129)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 도우미(<http://nip.cdc.go.kr>)
• 기타 문의사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48~6852

영유아 건강검진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검진결과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진단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구강 검진	-	-	○	-	○	○	-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이 발송되면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만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진)

1. 지원대상

만 3~6세 아동

2. 지원내용

- 어린이집 아동 등에게 시력검진 및 눈 보건교육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아동의 눈수술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취학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아동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에 불소제제를 덧어씌우고,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05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가정위탁 아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원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12만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3만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천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입양아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천원 (경증) 월 55만 1천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제도 참고(141p)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06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 드립니다.

초등 돌봄교실

1. 지원대상

- 오후돌봄 (방과후~17:00)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 학생
 - 3학년 이상은 전년도에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을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
- 저녁돌봄 (17:00~22:00)
 -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 ※ 3~4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

2. 지원내용

- 오후돌봄 :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활동,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간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녁돌봄 : 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급·간식은 학부모 부담(단,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무료)
 - ※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휴식, 숙제, 독서 등 개인활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재학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원

1. 지원대상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2.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로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 4학년~중학 3학년 청소년

2. 지원내용

일일 4시간, 6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방학중에도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 전문체험활동(주중 주 4시간, 주말 월1회 5시간)
- 학습지원활동(교과학습 주 4시간, 보충학습 주 5시간)
- 자기개발(2시간 이상),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역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기타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31~3)

07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고교학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교육부 ☎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교육부 ☎1544-9654)

급식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 지원내용

자녀의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합니다.(무상급식 지역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교육부 ☎1544-9654)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 지원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을 지원합니다.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교육부 ☎1544-9654)

자주하는 질문

- **고교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저소득 수급자격 기준)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시도교육청별 항목별로 다르나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60%(4인기준 219만 5,717원~ 263만 4,860원) 이내
- **고교학비지원 신청기간 후에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후에는 학교장 추천제도를 이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

2. 지원내용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6년)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 질문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8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장학금 지원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1.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I 유형 :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가장학금 II 유형 : II 유형에 참여한 학교의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하되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 '14년 이후 국내대학 입학자 중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단, '93.1.1. 이후 출생자에 한함)

2. 지원내용

- I 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2015년 소득분위별 연간 지급금액〉 (단위 : 만원)

소득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원금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 II 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기초~2분위는 연간 480만원 지원, '15년 기준임)
- ※'16년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문의(☎1599-2000)

알려드립니다

- **소득분위란?**
소득수준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청학생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하여 10개의 구간(기초~10분위)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근로장학금

1. 지원대상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으로 성적 C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2. 지원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시급단가 :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
- 최대 인정시간 : 주간 20시간, 야간·원격·방학중 40시간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알려드립니다

- '15학년도부터 장학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 소득분위를 변경*하였으며 우선순위 1순위 범위를 조정** 하였습니다.

* (기존) 7분위 → (변경) 8분위

** (기존) 1순위 ~ 소득 3분위 까지 → (조정) 1순위 ~ 소득 4분위 까지

드림장학금

1. 지원대상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우수학생

- I유형, 국내장학생 : 졸업예정자인 고교 2, 3학년
- II유형, 해외장학생 : 국내장학생(I유형) 중 해외대학 진학자

2. 지원내용

- I유형, 국내장학생 : 진학 준비에 소요되는 실비 경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II유형, 해외장학생 : 연간 최대 5만달러(USD) 이내(학비, 체재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학비 :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학교시설 이용료
 - 체재비 : 연간 최대 2만달러(USD)
 - 항공료 : 연간 최대 2,500달러(USD) 이내에서 매년 1회에 한해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 지원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 학과(부) 3학년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장학생 선정 후 해당학기부터 2년간 지원합니다.
(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 지원금액 : 매학기별 대학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이내에서 지원(예산 범위 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4년제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학생 및 이공계열 학과(부) 3학년 진급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학생(매학기 일정 성적** 이상 충족 시 계속 지급)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중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2. 지원내용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을 지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학기당 18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인문100년 장학금

1. 지원대상

인문학에 대한 학생의 학업의지와 대학의 인재육성계획을 반영하여 '전공탐색유형'과 '전공확립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선발

• 전공탐색유형

- 선발대상 : 국내 고교 3학년 및 4년제 대학 1학년
- 선발방법 : 인문사회계열 분야에서의 성장가능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 석·박사 진학 연계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으로 우선 선발

• 전공확립유형

- 선발대상 : 국내 4년제 대학 3학년
- 선발방법 : 대학별 인재육성계획 평가 후 대학에 선발권 부여
- 석·박사 진학 연계 : 대학별로 BK21플러스(인문학국제원사업(배)) 및 자체 지원계획과 연계

2. 지원내용

- 전공탐색유형 : 대학 1~4학년 등록금, 생활비(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학업장려비를 지원합니다.
- 전공확립유형 : 대학 3~4학년 등록금, 생활비(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학업장려비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알려드립니다

- '15학년도부터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장학금이 '인문100년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고교단계부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여 진학을 유도하고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재구성되었습니다.

09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학자금 대출 지원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받고 취업한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든든학자금] 대출

1.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층(만35세~만45세)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와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가능 확대를 위해 취업후상환학자금 시범 실시(전문대 계약 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2. 지원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원 한도(학기당 150만원)에서 대출이자 2.7%로 대출해 드립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및 3분위 이하의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무이자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1.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학부생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 대학원생 : 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 56세 이상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2.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등록금 대출한도]
 -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학생

순위	지원대상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추천자

2. 지원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11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지원대상

실종아동(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포함) 및 가족

2. 지원내용

- 실종·유괴예방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지원합니다.
- 전단 제작 지원 등 실종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학대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용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 아동학대 의심 상황 : 신체·정서·성학대·방임 및 유기, 신체적·행동적 징후

2. 지원내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심리치료 서비스	학대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교육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가족기능 강화사업 추진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112) 또는 스마트폰 앱(App) "아동학대" 설치 후 신청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전국56개소, <http://korea1391.org> 설치현황 참조)

학대피해아동 쉼터

1. 지원대상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학대재발 위험이 높아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피해아동

2. 지원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을 지원합니다.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등을 지원합니다.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협조 요청

자주하는 질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제 63조)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신학검임교사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총 24개직군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의주주 소홀, 학교나 병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학대피해의심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와 관련한 대략적인 정보(이름, 나이, 주소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을 말씀 해 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되지 않나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 3항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세, 만 13세 가입 가능

2.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원 이내의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드립니다.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3만원까지 가능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드림스타트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 체험, 양육지원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12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위기상황에 처해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주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센터) 운영

1. 지원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2. 지원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5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를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740, <http://www.nyhc.or.kr>)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없이 ☎1388), 교육청, 청소년쉼터, 학교, 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자주하는 질문

- ◎ 참가비용은 얼마나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일반가정은 월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기과정(4박5일)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참가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 지원대상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9~24세)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성·학교·가정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

2. 지원내용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후 청소년의 문제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청소년전화(☎138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청소년 특별지원

1. 지원대상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위기 청소년(학업 중단,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사(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청소년상담전화(☎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 지원대상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신청연령 : 만 9세 ~ 24세의 청소년

2. 지원내용

상담에서 멘토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상담지원	심리·진로상담 / 학습동기 강화상담 / 가족상담 등
교육지원	복학, 상급학교, 대안학교 진학 지원 / 검정고시 지원 /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지원
취업지원	직업체험 / 진로교육 / 경제활동체험 / 취업연계 지원 등
자립지원	생활 지원 / 건강·정서 지원 / 법률교육 / 자격취득 / 자기개발 지원 등
건강증진	건강검진 / 건강생활실천관리 지원 / 체력관리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재능 개발 / 자원봉사 활동 / 지역사회 참여활동 / 지역 특화체험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교과서학습 지원 / 특기적성 지도 / 진로상담 / 심리·정서 지도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 상담

3. 신청방법 및 문의

- 청소년상담전화(☎138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kdream.or.kr) 신청

청소년 성문화센터

- 1.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 2. 지원내용**
 -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유치원,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 1.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청소년
- 2. 지원내용**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등 숙박교육 후 1년간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기본과정으로 청소년 성장캠프 40시간 및 심화과정으로 희망키움 과정 20시간 교육과정 지원
 - 성장 캠프 전·후에도 심리적지지,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전·사후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긴급전화 ☎1366)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 1.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 2. 지원내용**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치유 등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및 치유특화프로그램 운영(인터넷치유 캠프, 가족치유캠프 등)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일반청소년 최대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60만 1,925원) 이하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1388) 또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

WEE 클래스 상담지원

- 1. 지원대상**
학생 및 학부모
- 2. 지원내용**
학교폭력, 교우관계 등 개인, 가정, 사회 요인에 의한 학교적응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 등을 통해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합니다.

구분	내용
Wee클래스 (학교)	잠재적 위기학생에 대한 개인상담/집단상담/교육프로그램/심리검사/자문 수행
Wee센터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희망 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연계서비스, 심층심리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 제공
Wee스쿨 (시·도 교육청)	장기위탁교육,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치유 및 교육,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가정형 Wee센터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주거)·상담·교육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3. 신청방법 및 문의**
 - Wee홈페이지(www.wee.go.kr)
 - 위프로젝트 특임센터(☎02-2057-8701~7)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 지원대상

9~24세 위기 청소년 및 가족

2. 지원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 Net)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정 기간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청소년전화 1388

1. 지원대상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2. 지원내용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상담부터 가족갈등, 교우관계 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 문제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 및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전화상담 : ☎1388 또는 지역번호+1388로 전화
- 문자상담 : #1388번으로 문자상담
-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 www.cyber1388.kr에 접속해서 채팅방 참여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 지원대상

부모 이혼 등의 가족해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비행·범죄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2. 지원내용

의·식·주 등 생활보호에서부터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청소년전화(☎1388), 1388 홈페이지(www.cyber1388.kr)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쉼터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7일 이내부터 최장 3년 까지(필요 시에는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머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 연장가능 (최장 9월)	3년 이내 ※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필요시 1년 단위 지속 연장가능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사업

1. 지원대상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16, '17년 진단계획)

2. 지원내용

- 환경보건법 적용 유예시설을 대상으로 중금속, 기생충알 등 환경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진단을 무상 지원합니다.

* '16~'17년 27천개소 진단예정

항목	평가 기준
① 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	• 활동공간내 모든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② 도로나 마감재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 • 납이 질량분율로 0.06% 이하
③ 실내공간의 오염물질방출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mu\text{g}/\text{m}^3$ 이하 • 폼알데하이드 100 $\mu\text{g}/\text{m}^3$ 이하
④ 목재의 방부제	• 사용이 금지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⑤ 토양 중금속	•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⑥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⑦ 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
⑧ 합성고무바닥재 폼알데하이드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mg/kg 이하

3. 신청방법 및 문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콜센터(☎1899-1021)
- 어린이활동공간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

13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1. 지원대상

만 15~24세 대한민국 청소년

2.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국가간 청소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규모 : 총 600여명(초청 300여명, 파견 300여명) • 교류시기 : 4~11월, 평균 10일 • 파견국 : 매년 약 20여개국 • 참가대상 : 만 16~24세 청소년 • 경비부담 : 항공료는 파견국, 체재비는 초청국 부담 ※ 자부담 : 왕복항공료의 80% • 주요내용 :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방문, 문화체험, 가정방문
한중 청소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규모 : 총 1,000명(초청 500명, 파견 500명) • 파견국 : 중국 • 참가대상 : 만 16~24세 청소년 • 경비부담 : 초청국에서 체재비, 항공료 전액 부담 ※ 자부담 : 참가비 30만원 • 주요내용 :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방문, 문화체험, 가정방문 등
청소년 해외자원 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규모 : 총 300여명 • 파견시기 : 7~10월, 10일 이내 • 파견국 : 말레이시아, 몽골 등 8개국 • 참가대상 : 15세~20세 • 경비부담 : 편도 항공료 및 현지 봉사 활동비 일부 지원 ※ 자부담 : 참가비 65만원 이하 • 주요내용 : 교육봉사, 노력봉사, 청소년교류, 문화체험 등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규모 : 총 25명 • 파견시기 : 8월~10월, 7~20일 이내 • 파견국 : 일본, 이스라엘 등 4개국 회의 참여 • 참가대상 : 만 16세~24세 • 경비부담 : 왕복 항공료의 70% 지원 ※ 자부담 : 항공료의 30% 및 기타 체재비 및 활동비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iye.youth.go.kr>)신청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5)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02-330-2895)
※ 공개모집(모집공고)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자주하는 질문

-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싶어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참가자 선발기준은 공통적으로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참가활동 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원동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특기, 단체활동 참여의 적극성 등을 고려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전체 인원의 20% 이상 선발하고 있으며 성별이나 학교, 지역 등을 안배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1. 지원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및 법인·시설·단체

2. 지원내용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문의

지자체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	청소년담당관	☎02-2133-4130
부산	아동청소년담당관	☎051-888-1624
대구	교육청소년정책관	☎053-803-4045
인천	아동청소년과	☎032-440-2855
광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062-613-2294
대전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4684
울산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791
경기	아동청소년과	☎031-8008-2554
강원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859
충북	여성정책관	☎043-220-3953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2
전북	여성청소년과	☎063-280-4346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72
경북	여성가족정책관	☎053-950-2546
경남	여성가족정책관	☎055-211-6856
제주	복지청소년과	☎064-710-2843
세종	여성가족과	☎044-300-3723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3)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02-330-2847)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사업

1. 지원대상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청소년활동진흥)

2. 지원내용

사업과제	주요 내용
①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 지역 내 청소년활동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시설·단체 등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②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지도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교육 실시
④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운영, 보도자료 배포, 소식지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등
⑤ 지역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청소년활동 정보통신원(청소년·유관 기관 지도자, 대학생) 및 기자단(중·고등학생) 운영 및 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www.youth.go.kr)를 통한 정보 제공
⑥ 청소년활동 신고 지원	• 청소년활동 신고지원반 운영,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 안내 및 컨설팅,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 불편신고 응대 및 프로그램 실시정보 안내
⑦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 청소년분야 및 관련분야(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학교, 언론 기관 등)의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⑧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터전 관리, 전문인력 pool 확보 및 교육 실시, 청소년자원봉사정보시스템(dovol.youth.go.kr) 운영 등
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지원	• 지역별 인증 수련활동 활성화 컨설팅, 교육·설명회 운영,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지원, 실사 및 사후관리 등
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지원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광역 사무국으로서 해당 지역의 국제성취포상제 운영과 관련된 제반 지원업무 수행 및 청소년·기관의 참여 활성화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시·도	소재지	문의처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02-849-0404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042-488-0732~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052-227-0606~7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031-232-9383~5
강원	강원도 원주시(분소 : 강릉시)	☎033-731-370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041-562-9003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063-232-0479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061-280-9060~7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055-711-138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64-751-5041~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044-864-7935

알려드립니다

○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이란?

- 17개 시·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중앙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01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여 가정경제를 보호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제도

1.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자, 제1형 당뇨병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건강검진제도 참조(148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쌍둥이는 7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참조(79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02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1. 지원대상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2. 지원내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를 전부 부담했던 필수 검사·수술·약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료비의 5%(암, 심장병, 뇌질환), 또는 10%(희귀난치성질환)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예시>

- ▶ 대장암 환자 김모씨는 치료제인 '아바스틴'이 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가 1천 6백 25만원에서 98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 ▶ 희귀난치성질환자 박모씨는 치료제인 '아피니토'가 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가 2천 2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구분	'14년	'15년	'16년
약제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행위	MRI 등 영상검사	방사선 치료 수술행위	검사(유전자 검사 등), 교육 상담료 등
치료 재료	-	심장·뇌수술 등 첨단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시범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1회 지원합니다.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를 향상을 위해 병원 진료일 및 예약일에 맞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참여를 희망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등록·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 후 참여 가능
-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87)

자주 하는 질문

● 어느 병원·약국에서 가능한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방문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원을 처음 방문하실 때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1. 지원대상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암, 심장병, 뇌질환, 화상)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2. 지원내용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중증질환의 경우 5%,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10%로 낮추어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구분	암	심장병	뇌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 기간	5년	30일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이식 시 60일)	30일	1년	5년 (결핵 2년)

3. 신청방법 및 문의

-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1577-1000)
- 심장병, 뇌질환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1. 지원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저소득 계층(차상위포함)
-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넘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51만원)이하인 저소득 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120%(4인 기준 351~527만원)인 본인 부담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 이상인 가구 중 심의를 통해 지원

2. 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03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제도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천원~2천원 (2종)입원 10%, 외래 1천원~15%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자, 당뇨병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건강검진제도 참조(48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쌍둥이는 7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참조(79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금액 지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 신청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보상제

1.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 매 30일간 1종은 2만원, 2종은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지원내용

초과금액의 50%를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노인틀니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본인부담금 상한제

1.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적용한 후에도 본인부담금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 1종은 매 30일간 5만원, 2종은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적용 후 초과되는 금액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노인틀니 제외)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본인부담 면제

1. 지원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 적용 (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인 자, 행위환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등 록중증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신청에 의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이하 재학자, 임신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 심장질환자(수술을 포함한 입원 기간 최대 30일)

※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본인부담금은 본래 면제임

2. 지원내용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 해당되는 면제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기간(적용기간)이 긴것으로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지원내용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매월 6천원(72,000원/연)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의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인 있는 수급자(장기입원자)는
해당 기간 분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2. 지원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종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문의 후 신청(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152종)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가구*(산정특례 등록 후에 신청 가능)

- * 환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527만원) 미만, 최고재산액 300%(4인가구 대도시기준 2억 8,837만원) 미만
-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4인가구 기준 878만원) 미만, 최고재산액 500%(4인가구 대도시기준 4억 8,062만원) 미만

2.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근육병 등 질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 특수식이 구입비(만 18세 이상, 7개 대상질환) 등을 지원합니다.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입원·격리치료 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 보호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가구 기준 527만원)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2. 지원내용

201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합니다.

〈201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입원명령이란?

- 난치성 결핵인 다제내성결핵 환자나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결핵 환자들을 입원시켜 결핵 치료를 돕고, 관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5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제도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일반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만 40세·66세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국가 암검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기준에 적합한 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검진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 도달자, 학생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
영유아 건강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0~5세 영유아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일반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장·뇌혈관질환을 중심으로 1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2차로 검진 ※ 검진주기 : 2년 1회(비사무직은 1년 1회)
국가 암검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여(2년 1회) 간암검진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의 남·여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구분	지원세부내용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처방,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 만 40세 : 고지혈증, 복부비만 검사 - 만 66세 : 노인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치매, 골다공증 - 비취학 청소년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검사 등
영유아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1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총 7회(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3.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취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보건소에서 발송한 안내서 및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보건복지콜센터 ☎129)

06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립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이용

1. 지원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경증 질환자 및 일반 지역주민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2. 지원내용

-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 관리, 상담,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증 질환자 및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층사정평가, 상담, 프로그램 등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에게는 심층사정평가, 상담, 프로그램 등 1:1 맞춤형 서비스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바우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의(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 지원대상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

2. 지원내용

각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합니다.

- 흡연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 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 진료
-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재가암 관리

1. 지원대상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2. 지원내용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제공 및 치료약품과 기타 소모품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 지원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